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소비자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“소비자중심경영(CCM)인증” 제도의 명칭을 “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” 제도로 변경하고, 지정심사기관이 사업자 부담 비용을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소비자기본법」(이하 “법”)이 개정(법률 제21444호, 2026. 3. 10. 공포, 9. 11. 시행)됨에 따라, 시행령상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, 사업자가 지정심사기관에 직접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되 지정심사기관은 그 수입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정부위원 지명 조문을 삭제하고 민간위원을 국무총리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(안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7)

- 1) 최근 법이 개정되어 기존 “소비자중심경영인증” 제도의 명칭이 변경되고, 지정심사기관이 사업자 부담 비용을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

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.

- 2) 제도 명칭이 “소비자중심경영인증”에서 “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”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, 사업자가 지정 심사기관에 직접 심사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되 지정심사기관은 그 수입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.

나.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 개선(안 제18조)

- 1)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연구·검토를 위한 자문위원회로 전문위원회가 존재하나, 위원 구성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운영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.
- 2) 정부위원은 별도 지명 없이 관련 부처 담당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명 조문을 삭제하고, 민간위원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하도록 함.
- 3) 전문위원회의 구성 방법이 현실화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.

다. 기타 개정사항(안 제7조, 제20조, 제44조, 제46조, 제53조 및 제54조)

- 1) 최근 법 개정으로 법 제58조제2항이 신설되었으며,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(법률 제21447호, 2026. 3. 5. 공포, 2026. 7. 1. 시행)되어 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됨.
- 2) 법 제58조를 인용하는 조문을 수정하고, 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

시를 추가하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중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11조의2의 제목 중 “소비자중심경영인증”을 “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의 지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소비자중심경영인증(이하 “인증”이라 한다)”을 “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(이하 “지정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인증기준”을 “지정기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증을”을 “지정을”로, “인증신청서”를 “지정신청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인증기준”을 “지정기준”으로, “소비자중심경영인증서”를 “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확인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인증을 하는”을 “지정을 하는”으로, “인증을 할”을 “지정을 할”로 한다.

제11조의3의 제목 중 “인증표시의 사용”을 “지정표시의 사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인증을”을 “지정을”로, “인증의”를 “지정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인증”을 각각 “지정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4제1항 중 “인증”을 “지정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5의 제목 중 “인증심사비용”을 “지정심사비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인증심사비용은 인증”을 “지정심사비용은 지정”으로

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증심사비용”을 “지정심사비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지정심사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(이하 “지정심사기관”이라 한다)에 납부한다.

④ 지정심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의 사용계획 및 실적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6의 제목 중 “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”을 “지정심사기관의 지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(이하 “인증기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지정심사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증기관”을 “지정심사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”를 “지정심사기관에 대하여 지정심사업무”로 한다.

제11조의7의 제목 중 “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”를 “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인증이 취소된 사업자”를 “지정이 취소된 사업자”로, “인증이 취소된 날”을 “지정이 취소된 날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인증이 취소된 사업자”를 “지정이 취소된 사업자”로, “인증이 취소된 날”을 “지정이 취소된 날”로 한다.

제18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”을 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도”를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

· 특별자치시·도”로 한다.

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8조 단서”를 “법 제58조제2항 전단”으로 한다.

제46조제1항 중 “법 제58조”를 “법 제5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53조 중 “법 제58조”를 “법 제5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54조 중 “법 제58조”를 “법 제5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) <u>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</u> (이하 “시 · 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 ·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.	제7조(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) <u>특별시장 · 통합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1조의2(<u>소비자중심경영인증</u>)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<u>소비자중심경영인증</u> (이하 “인증”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목표, 경영방식 및 성과관리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<u>인증기준</u> 을 갖추어야 한다. ② <u>인증을</u> 받으려는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<u>인증신청서</u> 에 사업자등록증 및 조직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	제11조의2(<u>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의 지정</u>) ① ----- <u>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</u> (이하 “지정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정기준</u> ----- <u>기준</u> -----. ② <u>지정을</u> ----- ----- <u>지정신청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,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.

제11조의3(인증표시의 사용) 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·용기, 홍보물, 문서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인증의 도안, 규격 등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

③ -----
----- 지
정기준-----
----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
정확인서-----

-----.

④ -----
--- 지정을 하는 -----

----- 지정
을 할 -----.

제11조의3(지정표시의 사용) ① 지정을 -----

----- 지정
의 -----.

② ----- 지정-----

--.

③ -----
----- 지정-----

다.

제11조의4(포상 또는 지원 등) ①
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
2제5항에 따라 포상 또는 지원
등을 하는 경우 인증의 등급에
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
있다.

② (생략)

제11조의5(인증심사비용) ① 법
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심
사비용은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
자가 부담한다. 다만, 「중소기
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
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
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,
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공
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
다.

<신설>

<신설>

--.

제11조의4(포상 또는 지원 등) ①

----- 지정-----

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5(지정심사비용) ① ---

----- 지정심사

비용은 지정-----

-----.

-----.

② ----- 지정심사비용-----

--.

③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는
지정심사비용을 소비자중심경
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(이하
“지정심사기관”이라 한다)에 납
부한다.

④ 지정심사기관은 제3항에 따
라 정수한 수입의 사용계획 및

제11조의6(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(이하 “인증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의7(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) ① (생략)

②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

1.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: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

실적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6(지정심사기관의 지정)

① -----

----- 지정심사기관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지정심사기관-----
-----.

③ ----- 지정심사기관에 대하여 지정심사업무-----
-----.

제11조의7(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
-- 지정이 취소된 사업자---
-- 지정이 취소된 날-----

2.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
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:
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
제18조(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
영) ①·② (생략)

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
2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
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정책위원
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
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
위촉하고, 전문위원회의 위원은
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
상행정기관 및 법 제25조제1
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심의
·의결 사항과 관계되는 중앙
행정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
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
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
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
는 사람 각 1명

2. (생략)

3.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
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
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의 위
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
2. -----
-- 지정이 취소된 사업자---
-- 지정이 취소된 날-----

제18조(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
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
-----.

<삭 제>

1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2. -----
--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--

제20조(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) ①시·도지사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소비자권익 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44조(처리기간의 연장) 법 제58조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46조(분쟁조정절차의 분리·병합)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53조(자료 등의 제출 요청) 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분쟁

제20조(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) ①----- 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-----
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4조(처리기간의 연장) 법 제58조제2항 전단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46조(분쟁조정절차의 분리·병합) ①----- 법 제58조제1항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3조(자료 등의 제출 요청) ---
----- 법 제58조제1항 ---

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그 신청인이나 분쟁당사자 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제54조(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) 조정위원장은 <u>법 제58조</u>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 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분쟁조 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 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보상방법에 대 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	제54조(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) - ----- <u>법 제58조제1항</u>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0 - 4409